

# 청 양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90호 2019. 5. 16.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회 람							
--------	--	--	--	--	--	--	--

발행 청 양 군 (편집 기획감사실 ☎041-940-2051)

## 조 례

- 제2380호 청양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3
- 제2381호 청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 6
- 제2382호 청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1
- 제2383호 청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3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2019년 5월 16일

청양군 조례 제2380호

### 청양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청양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청양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보도 및 도로 상의 횡단보도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 교육)** ① 군수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 보급과 교통안전에 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내의 어린이·고령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통질서 제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봉사 단체에 교통질서 제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등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가 필요한 경우
2. 출·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가 필요한 경우
3. 지역축제 등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교통 봉사 단체 지원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교통질서 계도 활동을 하는 교통봉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청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규정」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9년 5월 16일

청양군 조례 제2381호

### 청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 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근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소멸화·사료화·퇴비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기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 1항에 따른 일반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에 따른 운용요령 및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등)** ① 감량기기를 설치·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감량기기 중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법으로 음식물 폐기물의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②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사용이 간편하며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설치한 사람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감량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감량 후 발생한 부산물은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등)** ① 군수는 감량기기 설치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제1호의 별표 1의1.단

독주택 중 가.단독주택 및 다.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가정용 감량기기 1대에 한정한다.

③ 지원금액은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8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이하“신청자”라 한다) 구입 또는 설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읍·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감량기기를 설치한 각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신청자는 구입영수증(판매점명, 판매책임자, 상품명, 구입연월일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관할 읍·면장은 감량기기의 구입 또는 설치사실을 현장에서 확인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의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우선 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기타 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청양군 군세징수 조례」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지급받은 세대가 보조금 지급일로 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신청한 경우
3. 감량기기의 성능 및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제5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9년 5월 16일

청양군 조례 제2382호

### 청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회”를 “주민자치회 또는 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위원회”를 각각 “주민자치회 또는 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 “위원회”를 각각 “주민자치회 또는 위원회”로 하고, 같은조 제6항 및 제7항 중 “위원회”를 각각 “주민자치회 또는 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주민자치회 또는 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 또는 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심의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각종 교육 및 행사와 공동체 사업 등 주민자치 업무를 추진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읍장·면장”을 “면장”으로, “읍사무소·면사무소”를 “면사무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읍·면”을 “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중 “읍장·면장”을 각각 “면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읍장·면장”을 “면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읍장·면장”을 “면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5항 중 “읍장·면장”을 각각 “면장”으로 한다.

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지원사업) 군수는 위원회가 제16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면서 자치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공모사업 및 지역특색사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중전의 제24조) 중 “위원회”를 “주민자치회 또는 위원회”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9년 5월 16일

청양군 조례 제2383호

### 청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명칭)** 청양군에 설치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은 청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4조(설치)** 센터의 위치는 청양군보건의료원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청양군보건의료원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제5조(운영 위탁 등)** ① 센터는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6항에 따라 그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간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위탁 계약 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2.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위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4.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5.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7조에 따라 위탁 관리가 취소된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제6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위탁조건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의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건강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청양군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가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사업
3. 재가정신질환자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연계
4.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한 응급체계 구축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6.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7. 정신질환자 또는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자조모임 지원
8. 전문인력의 양성·관리 및 지역사회 자문
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10조(예산 등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가정신질환자들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 차량지원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가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제7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 등)** 군수는 센터 이용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 한도액의 범위에서 센터 이용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이용료 경감 및 면제)** 군수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타 법령에 따른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크게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청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보고에 대한 자문
3. 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 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나. 정신보건관련 전문가 또는 정신건강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다. 정신질환자(등록 회원) 또는 그 가족

④ 운영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사업과 정신보건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신건강사업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위촉의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보고 및 감독)** ① 군수는 위탁받은 기관·단체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